

의안번호	제 200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 302 회)

**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 상 필 교육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7월 1일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- 발의연월일 : 2011년 7월 1일
- 발 의 자 : 박상필 교육의원
최미애, 장병학, 이광희,
전응천, 최진섭, 하재성의원

1. 개정이유

- 2009년에 개정된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, 평생교육수요자 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
- 이에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·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및 지정절차를 정함(제2조,제3조,제4조)
-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(제5조, 제6조)
-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 등에 대해 정함(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평생교육법 제21조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2011. 6. 10. ~ 6. 30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 학습관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자료 개발
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4.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5.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
6.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체계 구축
7.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.

제3조(지정·운영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.)은 제2조의

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평생학습관의 지정·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해당 기관이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4조(지정절차)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
2. 시설·조직 및 예산 현황
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서
4.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 배치 현황
5.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

② 교육감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

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
2.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
3. 평생교육관계 공무원
4. 평생학습관의 관장
5. 그 밖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 및 직원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생학습관 지정·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학습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
제7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지원)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·감독·지정취소) ①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 및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운영책임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평생학습관

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수강료 징수)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, 교재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(2000. 10. 1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0. 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7 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관 련 법 령 발 체

□ 평생교육법

- 제21조(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교육기본법

- 제3조(학습권)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
- 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- ②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